보험금 청구서 (인보험)

◆ **보험계약 인적사항** (해당 항목 □ 칸에 체크(√) 또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피보험자	성 명		주민번호	–	의료급여수급권자 □
	휴대전화	– –		직업/직무	
	주소				
※ 기존에 당사에 제공하신 고객정보와 상기 휴대전화,주소가 다른 경우 고객정보가 변경됨에 동의합니다.					예 □ 아니오 □
보험계약자	성 명		주민번호	–	피보험자와 동일 □
보상안내 받을분	피보험자 □ , 계약자 □ , 기타 □ ▶ 성명 :			관계 : 피보험자의 ( )	
	휴대전화		팩스		E-Mail

☞ 접수,진행,처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(SMS)로 안내됩니다.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아래 항목에 체크(√) 바랍니다.
안내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□ 팩스 □ 서면(우편) □

■ **사고 관련사항** (해당 항목 □ 칸에 체크(√) 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☞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(일부 보험금 청구를 원하실 경우 사유와 청구하려는 보험금 등을 아래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주십시요.)

유형				
□ 질병	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	□ 상해	급격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를 다친 경우	
세부	□ 의료비	병원에 입원,통원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	□ 사망	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
	□ 수술	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수술(절단,절제등) 한 경우	□ 장해	상해,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훼손이 영구히 남은 경우
	□ 진단	특정 질병에 대해 진단이 최종 확정 된 경우	□ 운전자	교통사고로 인하여 비용(벌금,처리비용 등)이 발생한 경우

세부내용				
사고일(발병일)	년 월 일 시	사고장소		
사고경위 (6하 원칙 작성)				

참고사항					
*동일사고(병명)로 과거 청구가 있는 경우		진단명/증상	병원명	진료과목	
추가 청구여부	기존 청구 접수번호				
예 □ 아니오 □					
교통사고	자동차보험 접수	예 □ 아니오 □ (자동차 보험사 :)	이륜차사고	예 □ 아니오 □	
	사고차량번호		탑승위치	운전석 □, 조수석 □, 뒷좌석 □, 보행중 □, 기타 □	
일부청구					

☞ 암진단비(유사암제외)(가사도우미지원) 특별약관 지급 형태 □ 보험금 지급 □ 현물 서비스 신청

■ **다른 보험계약사항** (손해/생명보험,공제,단체보험 등) : 있음 □ 없음 □

보험(공제)회사명	1 ( ) 2 ( ) 3 ( )

■ **보험금 수령 계좌** (□ 아래계좌 송금, □ 자동이체계좌 송금 단, 자동이체 계좌는 피보험자 본인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)
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	예금주	

■ **청구자 확인사항**

1) 본인은 별지의 「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」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지급절차, 예상 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등)를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2) 본인이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'개인[신용]정보 처리 표준동의서'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작성일자	20 년 월 일	보험금청구자 (피보험자/수익자)	성 명	서 명

※ 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입원 · 진단 · 장해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행위이며,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※ **반드시 피보험자/수익자가 서명하시고**,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
※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■ **보험금 청구서류 우편접수 : (07212)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, 이레빌딩(신관) 14층. MG손해보험㈜ 장기보험금 접수처 (Tel : 1599-8598)**
■ **보험금 청구서류 팩스접수 : 0505-088-1646, 1647, 1648, 1649**

▶ 다음 페이지 계속

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표준동의서

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
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※ '동의' 란에 '√' 체크 하십시오.

1.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**수집 · 이용**하고자 합니다.
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---------- **동의함** □

□ **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**

- ㅇ 보험금지급 · 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- ㅇ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· 수납)

□ **수집 · 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**

- ㅇ 개인식별정보(성명, **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** 운전면허정보(**운전면허번호** 포함)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
- ㅇ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[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**진료기록**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]

□ **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 · 이용 기간**

- ㅇ **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 · 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, 별도 보관)**

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**조회**하고자 합니다.
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---------- **동의함** □

※ '업무수탁자' 는 당사로부터 보험금지급,심사 및 보험사고조사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
(당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법인등)을 말합니다.

□ **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**

- ㅇ 보험금지급 · 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□ **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**

- ㅇ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**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**

□ **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 · 이용 기간**

- ㅇ **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, 별도 보관함)**

▶ 다음 페이지 계속
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**제공**하고자 합니다.
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---------- **동의함** □

□ **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**

- ○ **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**
- ○ **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**
- ○ **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 · 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**
- ○ **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 · 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 · 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, 의료자문 대행업체, 헬스케어업체,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, 손해보험협회 등)**

□ **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**

- ○ **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**
- ○ **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동차보험에 한함)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**
- ○ **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구상금분쟁심의업무(자동차보험에 한함)**
- ○ **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· 수납)**

□ **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**

- ○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
  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
□ **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 · 이용기간**

- ○ **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**

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[www.mggeneralins.com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4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**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**민감정보(질병 · 상해정보)** 및 **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 · 운전면허번호)**를 처리(**수집 · 이용, 조회, 제공**)하고자 합니다.
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질병 · 상해정보 처리	**동의함** □
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 · 운전면허번호 처리	**동의함** □

20 년 월 일

동 의 자		**서 명**	

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

□ **청구서류 제출 및 지급절차 안내**

○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,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

○ 사고 접수 완료 시 접수번호, 보상담당자의 이름,연락처를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(SMS, LMS, 카카오톡 등)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.

○ 보험금 지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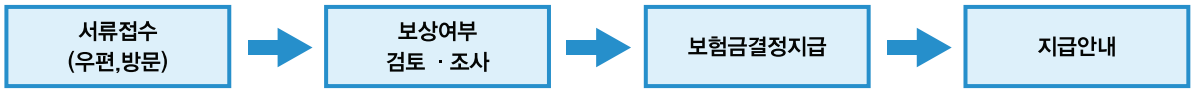

□ **손해사정사 선임 안내**

○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

○ **보험계약자 등 부담**

–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.

–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
○ **보험회사 부담**

–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
–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)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□ **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**

○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. 단, 타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 접수하셔야 합니다.타 보험사에 가입이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 ·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**보험금 부지급 및 재심사 청구**

○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드립니다., 지급심사 결과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인터넷 접수 : 홈페이지(http://mggeneralins.com)의 소비자광장 → 전자민원신청(VOC)을 통해 가능 / 전화상담 : 소비자 보호팀 02)3788-2074

○ 우편 접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엔지니어링공제빌딩 12층 소비자보호팀

□ **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**

○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: 질병,상해에 관한 보험금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,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, 재물 · 배상책임 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입니다.

○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○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**의료심사**

○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,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
□ **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**

○ 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(단, 2015.3.12. 이전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)

□ **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**

○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·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4항)

○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(업자)는 업무 수행 후 손해사정서를 청구권자에게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.(손해사정서 작성한 경우)
(보험업법 제189조)

□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(http://mggeneralins.com) 또는 콜센터(☎1588-5959)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**

○ 문 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콜센터(☎ 1588-5959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MG손해보험 콜센터 TEL : 1588-5959

오늘부터! MG손해보험